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> ○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최진섭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12년 6월 4일
O 회부일자: 2012년 6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 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각성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가.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1 조, 제 2 조).

나.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(안 제3조)

1) 꾜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
2) 제외대상

가)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나)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•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) 주민청구 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함.

다.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(안 제4조)

1) 비용발생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
2)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 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함.
3)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.

마. 중앙정부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, 기타이전수입, 자체수입, 지방교육채,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함(안 제5조).

바.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(안 제6조)

1)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,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 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게 함.
2) 비용수반 입안 시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.

## 5. 검토의 견

○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 며,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을 의 무화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지방자치법

제 66 조의 3 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(1)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 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(2) 제 1 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로의 작성 및 제출절차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.

제 132 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 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.

